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수입식품특별법, 수입검사 절차)

2019. 6. 25.



발표 내용 및 순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2 식품 수입연왕

3 수입식품등 검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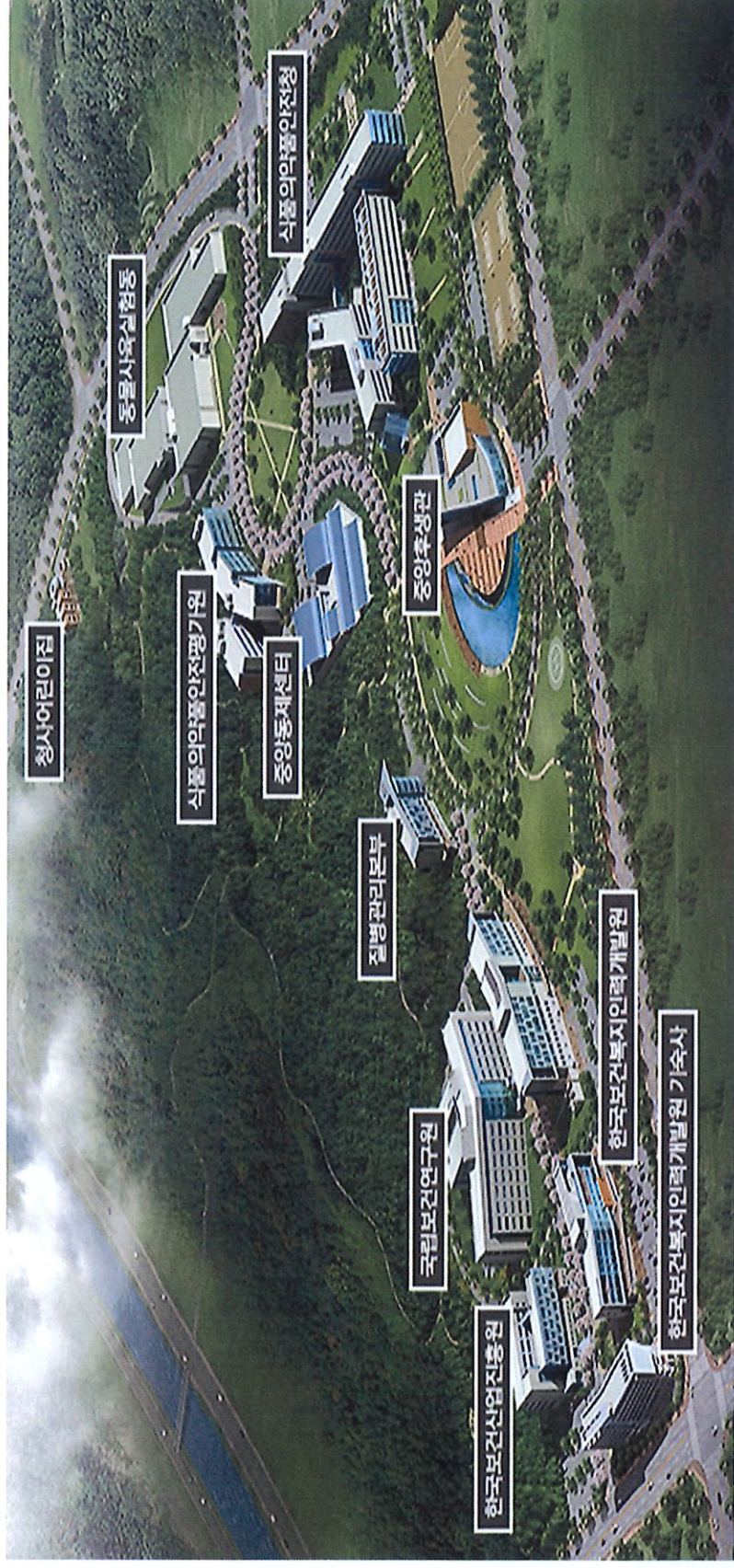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 우수수입업소
- 신고수리보류조치
- 검사명령제
- 주요 행정처분
-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식약처 위치

- 보건 의료 6개 국책기관 입주, 식약처 2011년 서울에서 오송으로 이전
- 본부동, 행정동, 연구심사동(AB), 시험검정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연혁

☞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13.3 국무총리실 직속 차관급 기관 승격
- ☞ 법령 제·개정(안) 제출 및 집행
- ☞ 축·수산물 포함하는 식품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 2017.3 조직개편에 따른 국 설치

2. 식품 수입현황 [2018년 기준]

2018년 수입

품목	계	식품				추산물	수산물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건수	728,120 (부적합 비율 0.19%)	71,258	271,741	12,043	39,074	118,673	99,920
증량(톤)	18,553,643	8,808,088	6,190,227	13,531	373,908	379,907	1,115,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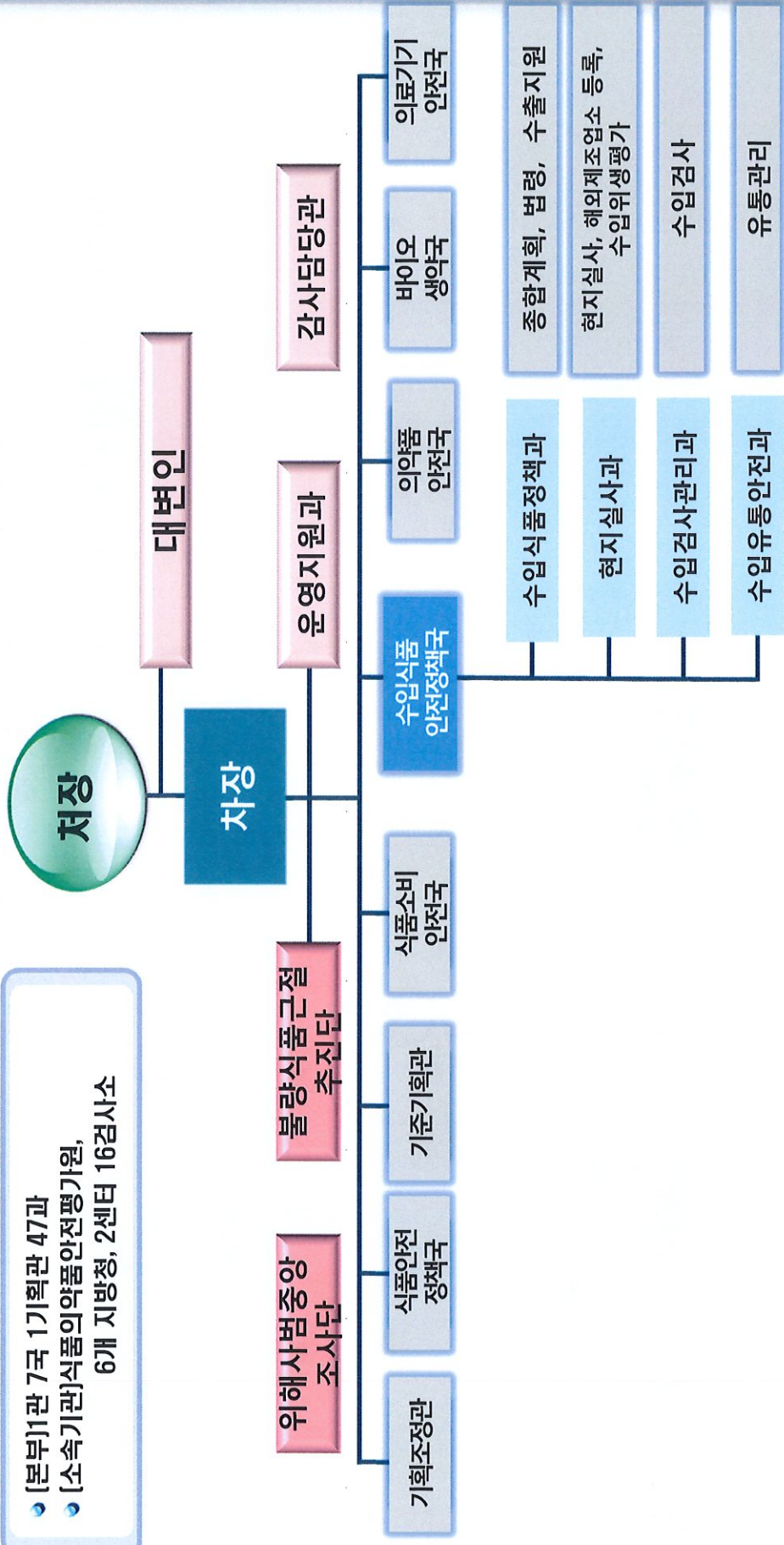
2018년 부적합

품목	계	식품				추산물	수산물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건수	1,382	127	857	122	16	206	95
증량(톤)	33,192	30,748	2,186	40	35	182	947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 -본부

조직

- [본부] 1관 7국 1기획관 47과
-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청, 2센터 16검사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7개 검사소
(의왕, 광주, 인천공항 평택, 인천항, 용인, 김포)

1개 검사소
강릉

경인지방청
서울지방청



경인지방청
서울지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

대구지방청

2개 검사소
(광양, 군산)

광주지방청

6개 검사소

(자성대, 신선대, 양산, 신항, 통영, 감천항)

부산지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
- 6개 지방청: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16개 수입식품검사소
- 수입신고 담당업무 280명, 분석업무 154명(2019.6월 기준)

2. 식품 수입현황 [2018년 기준]

검사종류별 현황

- ☑ 전체 검사종서류검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검사 비율 : **서류검사(65.8%)**, 현장검사(13.6%), 정밀검사(15.3%), 무작위 검사(5.3%)
- ☑ 부적합은 정밀검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부적합 비율 : 서류검사 (0.008%), 현장검사 (0.10%), **정밀검사(1.12%)**, 무작위검사(0.33%)

상위 10개국 현황 (166개국 수입)

- ☑ 수입건수 기준 중국, 미국, 일본, 태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수입
- ☑ 수입중량 기준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연방, 태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
- ☑ 수입 중량 상위 3개국(미국, 호주, 중국) 주요 수입품

: 밀, 옥수수, 쇠고기, 배추김치, 정제소금, 고추 등

순위	건수	중량(톤)
총계(166개국)	728,120	18,553,643
소계(10개국)	536,091	15,265,927
비율(%)	73.6%	82.3%

2. 식품 수입현황 (2018년 기준)

지방청별 수입현황

- ☑ 건수기준
 - 서울청 5.8%(42,224건), 부산청 30.9%(225,098), 경인청 61.4%(447,368), 대구청 0.2%(1,623), 광주청 0.9% (6,422), 대전청 0.7%(5,385건)

☑ 특징

- 바다와 인접한 부산청과 경인청의 경우 수산물 수입의 대부분을 처리
부산청 52.3%, 경인청 42.4%
- 수산물은 감천항, 통영, 인천항 검사소에서 많이 처리
- 경인청은 전체 건수 대비 61%처리 하며, 가공식품 63.8%, 축산물 81.4%, 건강기능식품 71%, 기구용기포장 60.9%로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건강기능식품은 인천공항검사소와 부산청 신항검사소에서 대부분 처리

2. 수입식품 수입현황-대만 [2018년 기준]

대만 수입량

대만산 수입식품은 전체 수입량 중 0.4% 차지

- 농산물은 망고와, 양상추, 우유가 수입되며, 가공식품은 음료베이스, 액상차, 당류가공품 등이 수입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무기질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원료성) 제품이 수입됨
- 수산물은 냉동공치, 냉동오징어, 냉동새치, 냉동기름치, 냉동고등어 등이 주로 수입
- 축산물은 가공유, 알가공품류 제품이 수입
- 부적합 사유: 미생물 규격위반(7), 보존료(3), 타르색소(2), 금속성이물(1), 잔류농약(1), 니켈 기준 위반(2), 형광증백제 검출(1)

2018년 대만 수입현황

품목	계	식품				축산물	수산물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건수 (부적합)	3,570 (17)	175 (0)	243 (14)	147 (0)	392 (0)	4 (0)	921 (0)
중량 (부적합)	70,307 (604)	1,803톤 (0)	20,052톤 (603)	243톤 (0)	1,350톤 (0)	0.6톤 (0)	38,598톤 (0)

3.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해외 제조업소 사전 등록

구분	내용
등록	수입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가 수입신고 7일전 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우편등 또는 시스템으로 신청
변경	해외제조업체 명칭, 소재지, 영업의 종류 변경 시 신청
갱신	등록 유효기간(2년) 만료되기 7일전부터 갱신 신청
등록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수입신고 거부	자료제출 거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

2016.8.4
부터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된 업체만 수입신고 가능
해외제조업소 등록 7일 이후에 신고가능하며, 7일 이전 수입신고시 반려

3.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서류검사(수입신고내용 검토, 2~3일)

- 1 신고한 내용의 수입관련개요, 제품개요, 제조공정, 원재료명/성분 등 검토
- 2 ①항 내용과 전산에 신고된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3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현장검사(3~5일)

- 신고한 한글표시사항과 현품의 수출국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수출국 표시사항 미표시: 반려
 -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보완
- 수출국 표시와 상이한 보관 방법시 부적합

무작위(5일)/정밀검사(10일)

- 기준규격 및 위해정보 사항 검사
 - ※ 「수입식품법」에 정한 수거량 수거
- 검사기간
 -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검사기관 및 지방청
- 검사기간
 - *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 ** 축산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검사결과

적합

국내 유통

부적합

반송, 폐기

적합

식품 등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세관통관

국내유통 사후관리

부적합

부적합 통보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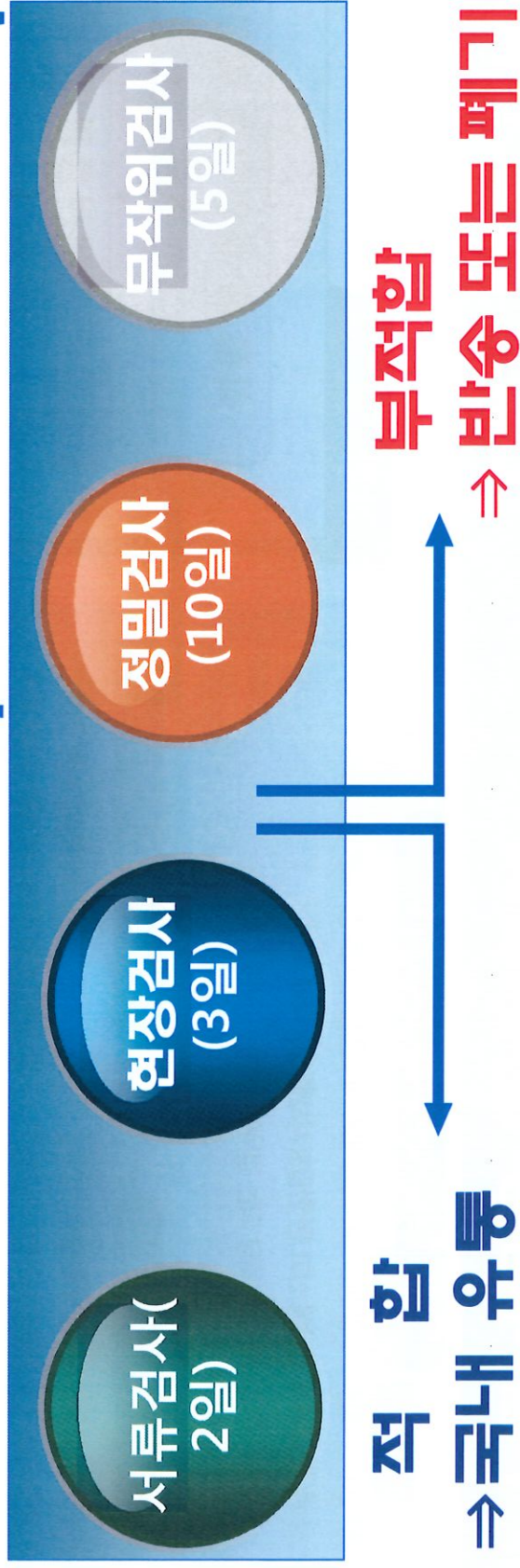
반송, 폐기, 사료용 전환
(곡류, 콩류에 한함)

3.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수입식품 등 검사방법

이화학 검사

미생물, 영양성분,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식품첨가물, 부정유해물질(예: 실데나필 유사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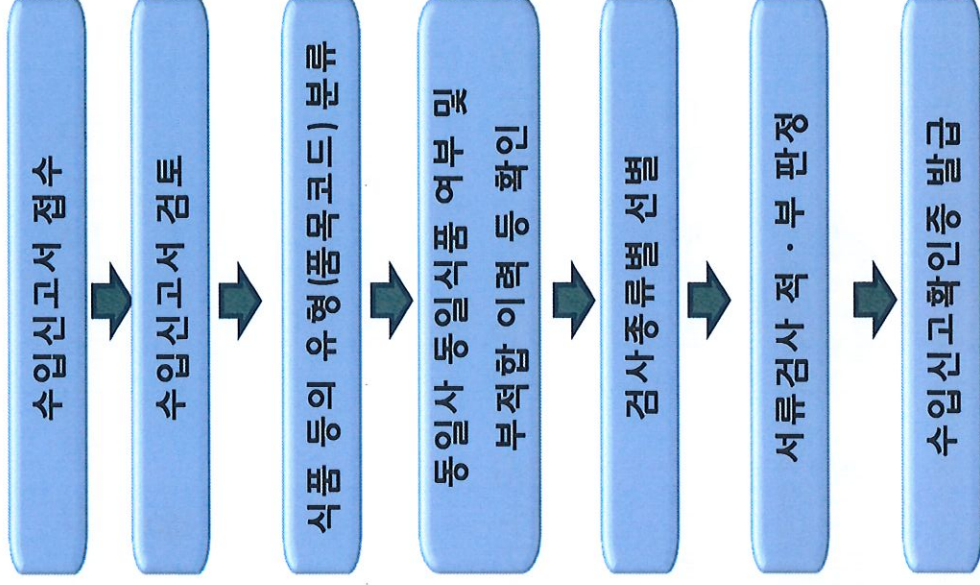


3.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서류 검사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대상 : 외화획득용 (관광용 제외), 자사제품 제조용원료, 연구·조사용,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3.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증빙서류

관련 규정 :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대상품목별, 원료, 표시여부, 위해정보 등에 따라 증명서를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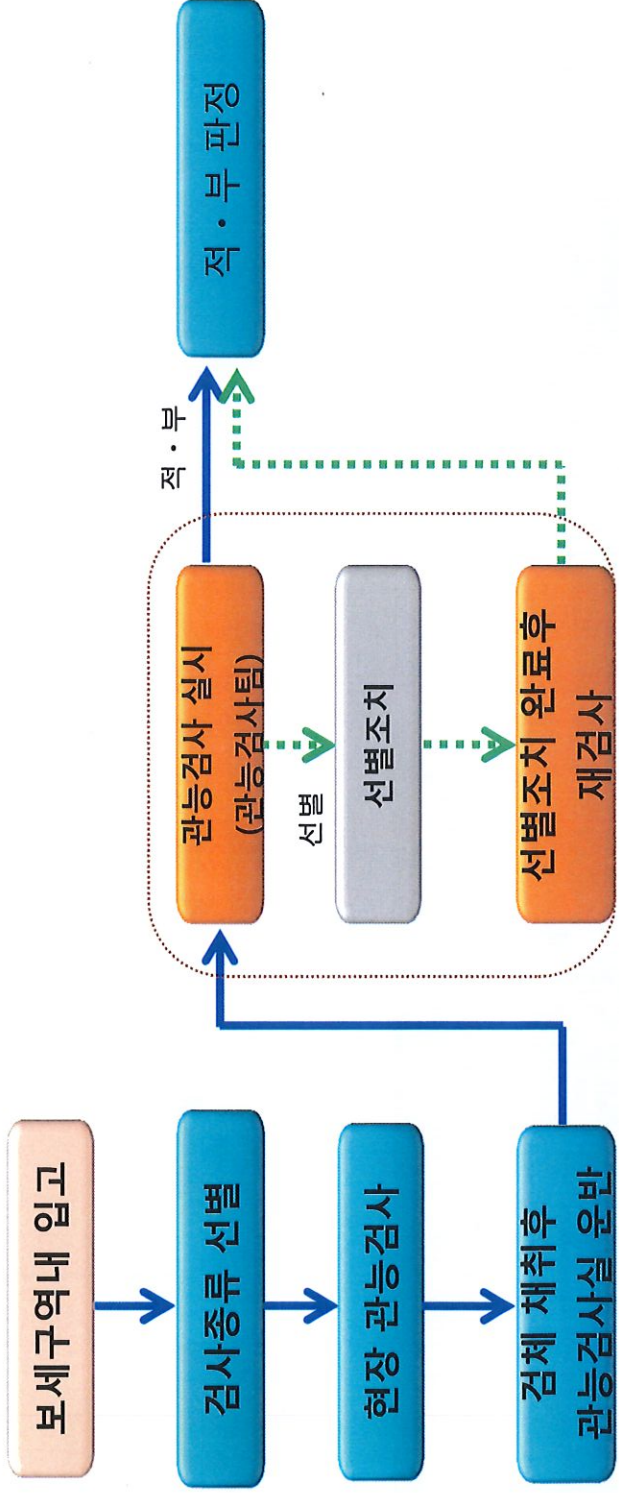
- GMO 표시대상 식품의 경우 표시면제 서류(구분유통증명서, 검사증명서, 정부증명서)
- 할랄인증 표시식품의 경우 증명서류
- BSE 증명서
- 다이옥신잔류량 검사 성적서(열처리 소금) 등
- 일본산 식품의 경우 방사능 검사 증명서 또는 생산지 증명서 등

3.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현장 검사

현장검사
(3일)

- 제품의 성질, 맛, 상태,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관능검사팀**(관능검사팀장 및 관능검사원) 구성 운영
- 대상 : 농·임산물 중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것, 최초 정밀검사(적합) 후 재수입되는 농·임산물 중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등



3.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정밀 검사



- 대상 : 최초로 수입되는 제품,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식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등

●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대상 :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대상 식품 중 무작위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추출된 식품 등

3.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 재검사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23조

☑ 요건

- 검사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제조시설, 제조공정, 제조일자가 같은 것)을 식약처가 인정한 국내외 검사기관 2곳에서 검사하여 그 결과가 다른 경우

☑ 신청방법

-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여 20일 이내 검사결과 통보

4. 수입식품특별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원화

종전(4개 법령에 분산)

- ✓ 식품위생법
- ✓ 축산물위생관리법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 수입식품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 민원편의 향상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전환

현행

- ✓ 통관단계 검사 중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 수입 前단계 현지 안전관리 중심

4. 수입식품특별법

법령구조

총칙(제1장)

수입전 단계
관리(제2장)

수입 영업
관리(제3장)

통관단계 관리(제4장)

유통단계 관리(제5장)

행정제제(제6장)

보칙(제7장)

벌칙(제8장)

부칙

4. 수입식품특별법

3단계 증송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입 전 단계 관리(제2장)

- 해외제조업소 등록(제5조)
-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제6조)
-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제7조)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제8조)
- 현지실사 등 위탁(제9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제10조)
-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제11조)
-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제12조)
-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제13조)

수입 영업 관리(제3장)

- 영업의 종류(제14조)
- 영업의 등록 등(제15조)
- 영업의 승계(제16조)
- 위생교육(제17조)
- 영업자 준수 사항(제18조)
- 영업자 구분관리(제19조)

통관 단계 관리(제4장)

- 수입신고 등(제20조)
- 수입검사 등(제21조)
- 검사명령(제22조)

유통단계 관리(제5장)

-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제23조)
- 유통관리 계획 수립·시행(제24조)
- 출입·검사·수거(제25조)
- 교육명령(제26조)

4. 수입식품특별법

목적 규정

*** 목적 (법 제1조)**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 및 영업자의 의무 규정

*** 책무 (법 제3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 등의 관리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들에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4. 수입식품특별법

통관 · 검사 · 영입의 등류

영입의 종류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위생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



영입의 종류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 수입관리과 식품안전관리과

영입의 종류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4. 수입식품특별법 - 우수수입업소

규정 : 수입식품특별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제출서류 :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점검 결과 보고서
해외 제조업소 허가 등록 신고관련 증명서

신청 방법 및 예택

수입업소에서 식약처에 신청 ≫ ≫ 식약처에서 현지 실사, 평가

≫ ≫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

혜택 : 무작위 표본검사 생략, 식약처 홈페이지에 업체 게시

처리기한 : 60일

현지실사 비용 : 식약처 부담

4. 수입식품특별법 - 신고수리보류조치

수입신고 보류조치 도입

수입식품특별법 제 20조 4항

-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법이 없는 경우
- 허가 승인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GMO등이 사용된 것으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해 정해진 시험법이 없는 경우
- 그밖에 식약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입식품특별법 - 검사명령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운영

* 검사명령제 (법 제22조)

1. 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2. 수입검사 또는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상기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운영규칙」에서 정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임

4. 수입식품특별법 - 검사명령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운영

<유의사항 >

1.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서 반려 조치
2. 해당 식품의 이종검사 여부를 수입신고처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

<해제요건 >

1.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최초 검사명령일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한 경우
4. 그 밖에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수입식품특별법 - 검사명령제

수입식품 검사명령 운영 연왕 (2019.6.24 기준)

연번	대상식품	검사항목	검사기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혼제건조어육 	벤조피렌	'13.12.~ (진행중)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집성목(集成木)으로 제조된 식품용 기구 	포름알데히드	'16.2.29.~ (진행중)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스낵과자류 	사이클라메이트	'16.2.29.~ (진행중)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스페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천연향신료 	금속성 이물	'16.2.29.~ (진행중)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국가 드럼스틱(모링가)을 50%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금속성 이물	'17.8.30.~'19.8.2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국가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복어유전자 검사	'17.8.30. ~ '19.8.2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냉동냉장 횡다리 새우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17.9.1.~'19.8.31

4. 수입식품특별법 - 검사명령제

수입식품 검사명령 운영 연왕 (2019.6.24 기준)

연번	대상식품	검사항목	검사기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국가 히비스커스 50%이상 함유 분말제품 	금속성 이물	'18.4.23~'20.4.2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향미유 	벤젠	'18.6.25~'19.6.2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방사능 (요오드, 세슘)	'18.10.22~'19.10.2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제품 (물 등으로 추출공정을 거쳐 건조한 제품은 제외) 	금속성이물	'18.12.24~'19.12.2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능이버섯 	방사능 (요오드, 세슘)	'19.4.23~'20.4.2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국가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농약 6종	'19.6.25~'20.6.24

4. 수입식품특별법 - 주요 행정처분

행정처분 - 수입신고 위반(제20조 2항)

제20조2항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강와(2017.2월)

-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어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1.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한 수입식품등을 수입 신고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2개월)
2. 제조업소, 소매처, 제품명, 용도, 원재료 및 제조일자(유통기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2개월)
3. 제조일자를 어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2개월)
4.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를 어위로 제출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2개월)

4. 수입식품특별법 - 수출 식품등의 위생증명

규정 : 수입식품특별법 38조 및 시행규칙 48조

증명서 종류

-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분석증명서, 제조증명서,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증명서 등

발급기관

- 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발급신청 및 방법

- 직접 신청 및 인터넷 접수
-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 지방청장의 압인과 외교부 등록 영문 인장 날인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위조방지 표시

참고사항 - 수입식품특별법 영문

www.law.go.kr



KOREAN

- HOME
- LAW BY CLASSIFICATION
- LAW SEARCH
- ABOUT KOREAN LAW
- REPOSITORY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s the Korean representative legal information web site

where all the law information can be searched

Law Title

★ You can search the law, click 'Law Title' or 'Law Context', and then enter 'search keyword'.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보시스템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Enforcement Date 28. Mar. 2017.] [Act No. 14476, 27. Dec. 2016., Amendment by Other Act]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sound order in trade and to improving people's health by ensuring the safety of imported food, etc., promoting improvement in the quality thereof, and providing proper information.

Article 2 (Defini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as follows:

1. The term "imported food, etc." means foods, food additives, apparatus, and containers and packages as defined under Article 2 of the Food Sanit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od, etc.") import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abroad, health functional foods under Article 3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lth functional foods"), and livestock products under Article 2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vestock products");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